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-121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구립예술합창단 단원의 나이 자격 등에 대한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단원의 자격 중 합창단원 및 실버합창단원의 나이 수정 (안 제7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3. 8. 24.~9. 13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5) 제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: 원안 의결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·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만 20세”를 “20세”로, “만 55세”를 “60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실버합창단은 만 56세 이상 만”을 “실버합창단원은 61세 이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단원 등의 자격) ① 구립예 술험창단 단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합창단원은 <u>만 20세 이상 만 55세</u> 이하의 구민으로 한다.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<u>실버합창단은 만 56세 이상 만 75세</u> 이하의 구민으로 한 다.</p> <p>②·③ (생 략)</p>	<p>제7조(단원 등의 자격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20세</u> ----- <u>60</u> <u>세</u>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실버합창단원은 61세 이상 -</u> ----- 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·운영 조례」 및
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전형준
연 락 처	02-3153-8356